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16. 8. .

제안자 : 행정건설위원장

1. 수정이유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정의를 명확히 표현하고, 위원회의 기능 확대를 위해 수정하고자 함.

2. 수정 주요내용

- 가. 안 제2조 중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및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을 “마포구를 경유하는”으로 함.
- 나. 안 제6조 2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함.(안 제6조 2호)
- 다. 안 제6조 3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으로 함. (안 제6조 3호)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중 “마포구, 강서구, 양천구 및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을 “마포구를 경유하는”으로 한다.

안 제6조 제2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을 “사업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6조 제3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기타 제반 사항 등”을 “마포구 사업구간 내 역사 및 기타 철도시설의 추가건설을 위한 제반사항 지원 등”으로 한다.

